안산시가로수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699

제출년월일 : '98.10.

제 안 자 : 안산시장

□ 제정사유

○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가로수의 계획적 식재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기능증진과 도시녹화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 가로수 손궤자등에게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로수식재(안 제4조)

ㅇ 아름다운 가로 조성과 도로의 기능증진을 위하여 가로수의 수종선택, 식재방법, 식재시기를 규정하고

○ 가로수 관리(안 제5조)

ㅇ 가로수의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비배관리 시기, 방법등을 규정하여 가로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 손궤자부담금등 징수(안 제6조)

ㅇ 사고 또는 위해 공사등으로 가로수 또는 그보호 시설물이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부분적인 손상을 입었을 경우와 이식,이설에 따른 비용부담 규정을 마련하였고

○ 시민관리제 실시(안 제8조)

ㅇ 가로수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주민으로 하여금 가로수에 대한 애호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물주기, 병해충 발생 신고 및 방제, 가로수에 피해가 되는 장애물 제거 등 시민권장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가로수관리위탁(안 제9조)

ㅇ 가로수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기본법, 임업협동

조합법에 의한 조경공사 면허업체, 임업협동조합등에게 가로수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도로법 제3조 (도로부속물의 정의)

○ 도로법 제64조 (원인자 부담금)

○ 도로법 제67조 (손궤자 부담금)

○ 도로법 제71조 (의무이행에 요하는 비용)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로법 제3조, 제64조, 제67조, 제71조

○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조례제정 사전 절차

- 조례안 입법예고 : '98. 9. 7 ~ '98. 10. 6 (30일간)

  ※재출의견 없음

○ 기타참고사항

- 서울특별시조경시설관리조례
- 가로수관리규정(산림청 예규 제426호)

안산시가로수관리조례안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가로수의 계획적 식재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기능증진과 쾌적한 도시가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 행정구역내 가로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 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라 함은 도시녹화, 경관조성, 공해방지, 운전자의 시계확보, 차량과 보행자의 완충적 기능을 위하여 도로 또는 도로변에 조화있게 심은 나무를 말한다.

2. "단열심기"라 함은 차도측 보도변에 1열로 심는 것을 말하고 "병열심기"라 함은 보도상에 2열로 심는 것으로 1열은 차도측에 1열은 반대측에 심는 것을 말한다.

3. "보식"이라 함은 가로수가 일정간격으로 심어져 있지 않고 빠져 있는 곳이나 죽은 자리 또는 교통사고등으로 인한 피해지에 식재함을 말한다.

4. "갱신"이라 함은 수형이 불량하여 미관을 저해하거나 기능에 부적합한 가로수를 제거하고 바꾸어 심는 것을 말한다.

5. "가로수 지주대"라 함은 가로수를 기상 및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존하여 가로수의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호시설물을 말한다.

6. "가로수 식수대"라 함은 가로수의 생육 영역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예방을 위하여 수간 하단부 지표면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7. "가로수 보호덮개"라 함은 가로수 식수대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고 뿌리분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 4조 (가로수식재) ① 가로수는 계획적으로 식재되고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② 가로수의 수종은 기후 풍토에 적합하고, 병해충 및 공해에 강하며, 수형이 아름다워야 한다.

③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고 가로수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도로에는 가로수를 심어야 한다. 다만 도로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가로수를 심는 열은 보도폭에 따라 심되 단열심기를 원칙으로 하며, 보도폭이 넓은 지역은 여건에 따라 2열 심기를 할 수 있다.

⑤ 가로수 식재는 수목활착이 양호한 식재 적기에 심어야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조 (가로수관리) ① 가로수 가지치기는 수형 조절을 위하여 늘어진 가지, 겹쳐진 가지, 병해충 고사지의 가지치기등 부득이한 경우와, 각종 공공안내판을 가리거나 통행 및 주변 건물에 저촉되는 수목 또는 사고 피해목의 불가피한 경우에 실시한다.

② 가로수의 병해충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해충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관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약제를 살포하여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③ 가로수의 생장촉진과 조기황화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거름주기, 환토 등의 작업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조 (손궤자 부담금등 징수) ① 시장은 도로법 제 64조, 제 67조 및 71조에 의거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가로수 또는 그 보호 시설물이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부분적인 손상을 입었을 경우 손궤자에게 손궤 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손궤자가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손궤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로수와 그 보호 시설물을 이식(이설) 또는 제거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사전에 그 비용을 예치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손궤자 부담금 또는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 7조 (가로수에 대한 금지 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가로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로수를 손상시키거나 피해의 우려가 되는 일체의 행위

2. 기타 가로수 또는 보호 시설물을 목적외로 이용하는 행위

제 8조 (시민 관리제 실시) ① 시장은 가로수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인근 공공기관·학교단체·기업체·상가등의 주민으로 하여금 가로수에 대한 애호정신을 갖게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및 방제

3. 가로수에 피해가 되는 장애물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시장에 신고

② 모든 시민은 그 일상생활에서 가로수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햐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9조 (가로수 관리의 위탁) 시장은 가로수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 면허업체, 조경식재 공사면허업체, 임업협동조합법에의한 임업협동조합등에 가로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손궤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조례 제6조와 관련)

구분	산 정 기 준	비 고
손궤자부담금	1. 벌채, 수간절단 등으로 조경수 가치가 없는 경우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 2.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부담금 = 수목비의 20%+보호시설재료비및작업비 ※ 강도의 가지치기 : 수관의 1/3이상 3. 약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부담금 = 수목비의 10% + 작업비	○ 도급공사설계비 및 수목비 : 세외수입
원인자부담금	4. 이식을 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	○ 도급공사설계비 :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5. 제거하는 경우 ○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	○ 도급공사설계비 : 세외수입

※ ○ 도급공사설계비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수목등 재료비 포함)하여 도급공사 설계비로 산정
○ 수 목 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시가 적용
○ 예치금납부방법 :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
○ 예치금예치기간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하자책임담보기간 동안 예치
○ 예치금 환불 등 : 예치기간이 경과후 이식목에 대한 조경수로써의 가치 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

[관계법령 발췌서]

도로법 제 3조 제 1항 제 2호, 동조 제 2항, 제 64조, 제 67조 제 1항, 제2항, 제 71조

제 3조 (도로부속물의 정의) ① 이법에서 도로의 부속물이라 함은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기타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2. 도로의 방호 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② 도로에 관한 이법의 규정은 도로의 부속물에 준용한다.

제 64조 (원인자 부담금) 타공사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 또는 타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수 있다.

제 67조 (손궤자 부담금) ① 관리청은 도로를 손궤할 사업또는 행위를 하는자가 있을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도로의 수선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사업자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수 있다.
②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수선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 71조 (의무이행에 요하는 비용) 이법또는 이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안산시가로수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699

제안년월일 : 1998. 11. 1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장 이하연외 5인

1. 수정이유

○ 가로수관리의 위탁에 관하여는 행정의 간여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민간위탁 사항에 대한 주요내용 등이 포함되고, 경기도사무위탁조례의 예와 같이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우리시 위탁조례가 정하여짐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여 수정키로 함.

2. 주요골자

○ 안 제9조 가로수관리위탁규정을 삭제시킴.

안산시가로수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가로수관리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가로수 관리 위탁)를 삭제하고,

제10조(시행규칙)을 제9조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제9조(가로수 관리의 위탁) 시장은 가로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 면허업체, 조경식재 공사 면허업체,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등에 가로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시행규칙) (생략)	제9조(시행규칙) (원안과 같음)